<요약정보> 작성기준일: 2024.03.25.

# 플러스 코리아 대표성장 증권투자신탁1호(주식) [펀드코드 : 17686]

| 투자 위험 등급 2등급 [높은 위험] | | | | | |
|---|---|---|---|---|---|
| 1 | 2 | 3 | 4 | 5 | 6 |
| 매우 높은 위험 | 높은 위험 | 다소 높은 위험 | 보통 위험 | 낮은 위험 | 매우 낮은 위험 |

**플러스자산운용㈜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2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이며**, 집합투자기구 재산의 **60% 이상**을 **국내 주식**에 투자합니다. 특히, 시장상황별 적극적인 주식투자 및 상승예상종목에 대한 집중투자로 **주식 가격 하락위험 등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요약정보는 **플러스 코리아 대표성장 증권투자신탁1호**(주식)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요약한 핵심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이전에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약정보]**

| | |
|---|---|
|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 | 이 투자신탁은 국내주식에 60% 이상을 국내주식에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 외 잔여자산을 채권 및 유동자산에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합니다. 시장상황에 따라 적극적 주식투자 및 상승예상종목에 대한 집중투자와 파생상품헷지전략을 통한 수익을 추구합니다. |
| **분류** | 투자신탁, 증권(주식형), 개방형(중도환매가능), 추가형(추가납입가능), 종류형 |

**투자비용**

| 명칭 (클래스) |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총보수(단위 : %) | | | | |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 (단위 : 천원) | | | | |
|---|---|---|---|---|---|---|---|---|---|---|
| | 판매 수수료 | 총보수 | 판매 보수 | 동종유형 총보수 | 총 보 수 · 비용 | 1년 | 2년 | 3년 | 5년 | 10년 |
| 수수료선취 - 오프라인형(A) | 납입금액의 1.0% 이내 | 1.345 | 0.67 | 1.56 | 1.3474 | 237 | 378 | 525 | 835 | 1,713 |
| 수수료미징구 - 오프라인형-보수체감(C1) | 없음 | 2.145 | 1.47 | 1.65 | 2.1450 | 218 | 426 | 627 | 1,006 | 2,071 |
| 수수료선취 - 온라인형(Ae) | 납입금액의 0.5% 이내 | 1.005 | 0.33 | 1.19 | 1.0050 | 152 | 259 | 370 | 605 | 1,279 |
| 수수료미징구 - 온라인형(Ce) | 없음 | 1.675 | 1.00 | 1.34 | 1.6771 | 172 | 349 | 533 | 918 | 1,996 |

(주1)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는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향후 투자기간별 지불하게 되는 총비용(판매수수료 +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선취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은 일정하고,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로 가정하였습니다.

(주2) **종류 A형과 종류 C1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 4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이며 **종류 Ae형과 종류 Ce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9개월이 되는 경과시점**이나 추가납입, 보수 등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종류 C1을 가입한 투자자는 1년 이상 경과 시 종류C2 → 종류C3 → 종류C4로 자동전환 되므로 상기 예시에서는 전환을 가정하여 적용한 것입니다.

(주3)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구체적인 투자비용은 투자설명서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주5) 종류 A(종류 Ae) 수익증권의 선취판매수수료는 납입금액의 1.0% (0.5%)이내에서 판매회사별로 다를 수 있으나, 상기에서는 납입금액의 1.0%(0.5%)를 선취판매수수료로 부과하는 경우를 예시하였습니다.

(주6) 미설정 된 클래스는 연간 기타비용이 확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각각 종류 C1, C2, C3는 0.0027%로 가정하여 산출하였습니다. 클래스 설정시 기타비용의 확정 등으로 예상비용이 변동 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실적 추이 (연평균 수익률)**

| 구분 | 최초설정일 | 최근 1년 | 최근 2년 | 최근 3년 | 최근 5년 | 설정일이후 |
|---|---|---|---|---|---|---|
| | | 23.03.26 ~ 24.03.25 | 22.03.26 ~ 24.03.25 | 21.03.26 ~ 24.03.25 | 19.03.26 ~ 24.03.25 | 09.12.04 ~ 24.03.25 |
| 수수료미징구 - 오프라인형-보수체감(C4)(%) | 2009-12-04 | 20.94 | 2.58 | -1.23 | 9.37 | 3.00 |
| 비교지수(%) | - | 13.32 | 0.14 | -3.09 | 5.00 | 3.10 |
| 수익률 변동성(%) | - | 15.06 | 16.31 | 15.51 | 19.21 | 16.51 |

(주1) 비교지수 : KOSPIx100% (비교지수 성과에는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음)
(주2)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집합투자기구 총비용 지급후 해당기간동안의 세전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3) 수익률 변동성(표준편차)은 해당기간 펀드의 연환산 주간수익률이 평균수익률에서 통상적으로 얼마만큼 등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로서, 변동성이 높을수록 수익률 등락이 빈번해 펀드의 손실위험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운용전문인력**

| 성명 | 생년 | 직위 | 운용현황 | |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국내주식형) | | | | 운용 경력년수 |
|---|---|---|---|---|---|---|---|---|---|
| | | | 집합투자기구 수 | 운용규모 | 운용역 | | 운용사 | | |
| | | | | | 최근1년 | 최근2년 | 최근1년 | 최근2년 | |
| 정순오 | 1982 | 책임(차장) | - | - | - | - | 31.15% | 7.27% | 7년 6개월 |

(주1) '책임운용전문인력'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주2)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3)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주4)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투자자 유의사항**

-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보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어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하시면 귀하의 집합투자증권 매입 이전까지 교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까지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위험등급을 확인하시고, 귀하의 투자 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 하시기 바라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요투자 위험**

| 구 분 |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
|---|---|
| 원본 손실위험 | 이 집합투자기구는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수익자가 부담합니다. 따라서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또한 이 집합투자기구는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 주식가격 변동위험 | 주식의 가치는 일반적으로 발행회사 고유의 위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라서도 급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식은 다른 여타의 자산보다 그 변동성이 큰 특징이 있으며, 이로 인해 주식투자 시에는 투자원금의 손실 가능성이 매우 큰 위험이 있습니다. |
| 부도 등의 위험 | 주식, 채권 등 이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종목의 발행회사 신용상태가 급격히 악화되거나 장외파생상품투자의 경우 거래상대방이 파산하거나 신용위기를 경험하는 경우에는 투자자금 전액의 회수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
| 환매청구시 위험 | 환매를 청구하시는 날과 환매대금을 결정하는 기준가격 적용일이 다르기 때문에 환매시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기준가격 적용일까지의 집합투자기구 재산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환매수수료가 부과되는 기간 중에 환매한 경우에는 환매수수료의 부과로 인해 투자손실이 발생하거나 손실의 폭이 더욱 확대될 수 |

| | |
|---|---|
| | 있습니다. |

| | | | |
|---|---|---|---|
| 매입 방법 | **오후 3시 30분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2영업일(D+1)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br>**오후 3시 30분 경과 후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 | 환매 방법 | **오후 3시 30분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제2영업일(D+1)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제4영업일(D+3)에 관련 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br>**오후 3시 30분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제4영업일(D+3)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 |
| 환매 수수료 | 없음 | | |

**기준가**

| | |
|---|---|
| **산정방법** | - 당일 기준가격 = (전일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 부채총액) /전일 집합투자기구 총좌수<br>-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 |
| **공시장소** | 판매회사 본·영업점, 집합투자업자 (www.plusasset.com) · 판매회사 ·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dis.kofia.or.kr)에 게시합니다. |
| **종류간 기준가격이 상이한 이유** | 종류간 판매보수 등의 차이로 인하여 종류별 기준가격이 서로 다르게 산정됩니다. |

(주1)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습니다.

**과세**

| 구 분 | 과세의 주요내용 |
|---|---|
| **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
| **수익자** | 거주자와 일반법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15.4%(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단,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
| | **연금저축 가입자에 대한 과세**(연금저축 종류 수익증권만 해당)<br>이 투자신탁은 연금저축계좌 불입 금액의 수령 시 관련 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일반 투자신탁 투자 시의 과세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퇴직연금 가입자에 대한 과세**(퇴직연금 전용 종류 수익증권만 해당)<br>이 투자신탁은 퇴직연금 수령 시 관련 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일반 투자신탁 투자시의 과세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세제혜택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과세 내용이 달라 질 수 있으며 과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환절차 및 방법**

이 투자신탁은 법 제232조에 의한 전환형집합투자기구가 아닙니다. 다만, 동일한 집합투자기구 내에서 다음과 같이 투자기간에 따라 보수가 점차 낮아지는 다른 수익증권으로 전환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1)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의 전환청구와 관계없이 수익증권의 보유기간(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 또는 최초 취득일을 기산으로 하여 다른 종류 수익증권으로 전환하기 위해 전환 시 적용되는 당해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종류의 수익증권으로 자동으로 전환합니다. 단, 수익자가 최초로 매입하는 수익증권은 종류 C1에 한합니다.

① 종류 C1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종류 C2 수익증권으로 전환
② 종류 C2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종류 C3 수익증권으로 전환
③ 종류 C3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종류 C4 수익증권으로 전환

(2) (1)의 규정에 따라 전환하는 경우에는 위의 각 해당 전환일에 전환처리합니다. 다만, 전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에 전환 처리합니다.

(3) (1)의 규정에 따라 전환하는 경우에는 적용되는 기준가격은 해당 전환일의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

| | |
|---|---|
| | 격으로 합니다.<br><br>(4)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청구를 진행 중인 경우에는 수익증권을 전환하지 아니합니다. |
| 집합투자업자 | 플러스자산운용㈜ (대표번호: 02-3787-2700 / 인터넷 홈페이지 : www.plusasset.com) |
| 모집기간 | 효력발생 이후 계속 모집 가능 / 모집.매출 총액: 1조 좌 |
| 효력발생일 | 2024년 04월 19일 / 존속 기간: 정해진 신탁계약 기간은 없음 |
| 판매회사 | 집합투자업자(www.plusasset.com), 한국금융투자협회(dis.kofia.or.kr) 인터넷홈페이지 참고 |
| 참조 | 집합투자업자의 사업목적, 요약 재무정보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 제4부.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경로-기타 펀드특성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되며, 집합투자기구 종류의 대표적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종류(Class) | |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
|---|---|---|
| 판매 수수료 | 수수료 선취(A) | 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미징구형(C)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 4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약 1년 4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높은 총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br>***온라인형(A-e, C-e)의 경우 일치하는 시점은 약 9개월이 경과되는 시점** |
| | 수수료 미징구(C) | 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선취형(A) 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선취형(A)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 4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약 1년 4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낮은 총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br>***온라인형(A-e, C-e)의 경우 일치하는 시점은 약 9개월이 경과되는 시점** |
| 판매 경로 | 온라인 (e) | 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
| | 오프라인 |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 | 온라인 슈퍼(S) |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낮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
| 기타 | 보수체감 (CDSC) | 판매수수료미징구형(C) 집합투자기구이며 이연판매보수(CDSC) 프로그램에 따라 판매보수를 적용하기 때문에 별도의 전환 청구없이 집합투자증권의 보유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판매보수가 낮은 종류의 집합투자기구로 자동 전환됩니다. |
| | 펀드 등 (F) | 펀드 및 기관투자자용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 | 고액 (s) | 회사가 정하는 방침에 따른 고액거래자용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 | 개인연금 (P1) |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 | 퇴직연금 (P2)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IRP)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 | 랩 (W) | Wrap Account용(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를 보유한 자)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8제3항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용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 증권신고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 투자설명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dis.kofia.or.kr), 집합투자업자(www.plusasset.com)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
- 정기보고서(영업보고서, 결산서류)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 자산운용보고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plusasset.com)
- 수시공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plusasset.com)